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공영차고지(저류조 포함)조성공사[장기1차]]

- 점검일시 : 2022.05.04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전소영, 박찬표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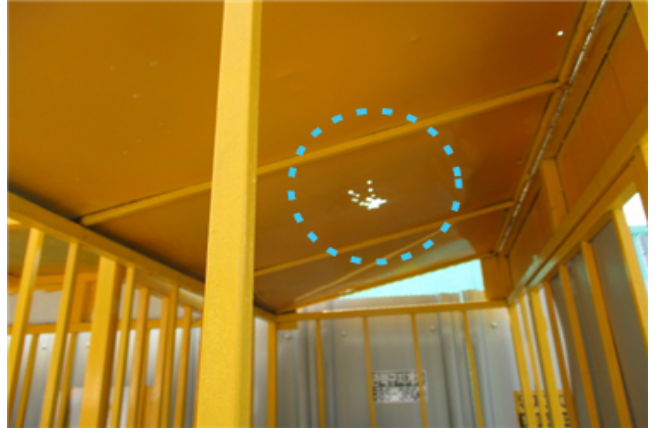
- 1) 상부가 훼손된 위험물 저장소는 보수 또는 반출하기 바라며, 화재/폭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내부에 확산소화기를 비치하고 매월 점검하여 관리바람
- 미사용중인 가스용기 게이지에 잔류압이 있으니 산소용기, 가스용기 등 고압용기 사용후에는 잔류압 제거 및 밸브 잠금상태를 확인 바람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

3.1.6-004(소화기)

3.1.6-009(위험물 보관소)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2) 시스템 동바리 작업 중 동바리 상단에 슬래브 거푸집 멩에재 등 자재 적치되어 있으니,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재 반출 등 조치 및 근로자 교육시행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4조(낙하물에 위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3) ① 철골 인양 시 사용된 러그가 돌출되어 있어 근로자 이동 시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,
- 전도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후 작업시행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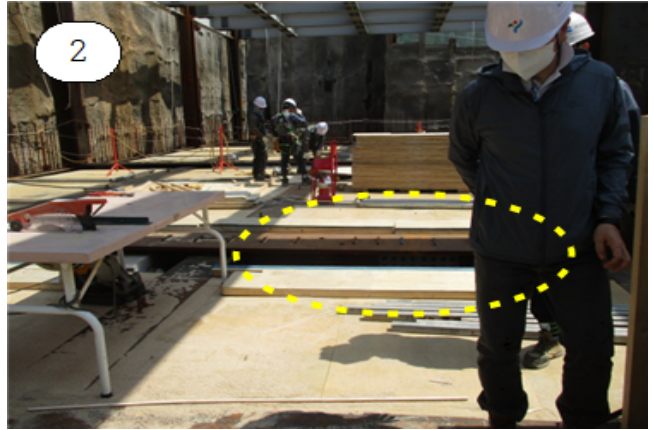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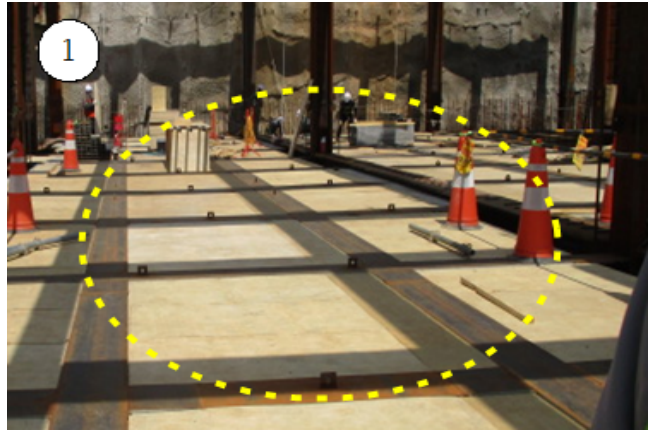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② 슬래브 거푸집 작업 중 작업통로가 일부 미흡하여 근로자 넘어질 우려 있으니,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③ 근로자 주통행 계단에 가설전선이 노출되어 있으니, 근로자 넘어짐 또는 감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조치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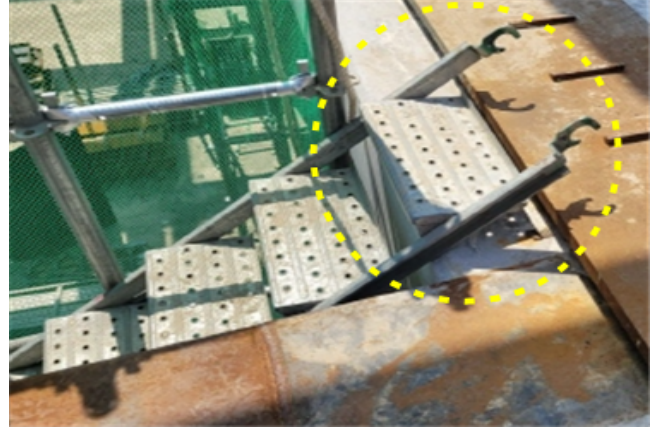
- 4) 이동통로에 유로폼 등 자재가 쌓여있어 폭이 협소하므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

- 가설계단 상부 고정이 미흡하고 사다리의 끝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근로자 이동시 전도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조치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

의 설치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5) 현장에서 사용중인 목재가공용 동근톱 및 고속절단기등의 RPM이 점검 시 확인되지 않는 바, 절삭공구보다 높은 RPM의 절삭날 사용하여 작업시행 바람.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
3.2.3-003(고속절단기)

